

2026년도 제2회 운수직 직원 공개채용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제2회 운수직 직원 공개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많은 분들의 응시를 바랍니다.

2026년 8월 25일
화성도시공사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직종 (업무분야)	인원	임기	보수(만원)	시험방법	근무예정지
총계		22명				
공개경쟁	운수직	20명	■ 무기계약직 (정년 만60세) ※ 3개월 수습	약 4,260	서류전형 인성·필기전형 면접전형	화성시 및 인근 지역
제한경쟁	(버스운전원)	2명				

※ 버스운전원 : 지정 버스 운전 업무 수행

- 1) 근무지는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 1일 2교대 또는 전일제 근무, 시차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초과근무 또는 주말근무가 있을 수 있음

※ 보수관련

- 급여는 급여는 기본급, 운행우수 포상금, 성실무사고 포상금, 친절서비스 포상금 포함
- 제수당(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등)은 별도임
- 성실무사고 포상금은 교통사고가 없는 경우 지급(사고 건별 본인 과실율 50%미만일 경우 지급하며, 과태료 발생 시 건당 50천원 차감 지급)
- 친절서비스 포상금은 개인별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A~D등급)하여 지급(0%, 50%, 75%, 100%)

2. 시험방법

가. 1차 전형 : 서류전형

- 채용분야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공란 및 동일기호 반복 등), 필수자격 미소지(증빙자료 미첨부) 등 불합격 처리

나. 2차 전형 : 인성·필기전형

구분	인성	필기
과목	근면성 / 책임감/ 협동성 / 리더십 / 준법성 / 집중력 / 감정 / 정서 / 배려심 등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 유형 / 자동차관리요령 / 안전운행요령 / 운송서비스 ※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준하여 출제
합격기준	신뢰도, 허구성, 인성점수 등에서 부적격 판정 시 불합격	인성검사 합격자 중 60%이상 득점한 자
문항	210문항(30분)	50문항(50분)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선발

다. 3차 전형 : 면접전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평정요소
 - ①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력
 - ④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 각 위원이 평가한 평점의 평균이 “보통(70점)” 이상인자 선발
-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미흡” 이하로 평정시 불합격

라.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점수 70% 및 면접점수 30%**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고,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는 채용구분별 5명까지 선정 가능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함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근거한 최종합격자 결격사유 조항 및 결격사유 미보유시 최종합격자 확정**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이며 공사 정년(만 60세) 이내

나. 거 주 지 : **제한 없음**

다. 결격사유 : 공사 운수직 보수 및 인사규정 제 10조 및 제19조 준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11.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2. 신체,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13. 운수수입금 부정행위 및 부당행위로 해고된 경우

14.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누락시킨 경우
15.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 자동차 운전 자격요건이 취소되었거나, 취득하지 못한 경우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따른 결격사유 보유자
기타 사항	- 전 직장에서의 재직 중 직무태만, 소행불량, 상사 명령 불복종,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사유로 파면, 해임, 직권 면직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공사 재직 중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일이 있는 자

라. 운수직 상세자격요건

구분	필수자격요건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
공개경쟁	■ 1종 대형운전면허증 소지자 ■ 버스운전자 자격증 소지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거한 자격요건 충족자(영업용 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 또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버스운수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 영업용 버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기준 승합자동차 ■ 운전경력증명서상 최근 1년간 무사고 운전자(공고일기준) ■ 최근 5년간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를 받지 않은 자(공고일기준) ■ 관련법규에 의한 운전정밀적성검사에 합격한 자 ■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장애인 제한경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자 - 장애인에 한하여 응시 가능하며, 장애인증명서 또는 상이등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 1종 대형운전면허증 소지자 ■ 버스운전자 자격증 소지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거한 자격요건 충족자(영업용 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 또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버스운수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 영업용 버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기준 승합자동차 ■ 운전경력증명서상 최근 1년간 무사고 운전자(공고일기준) ■ 최근 5년간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를 받지 않은 자(공고일기준) ■ 관련법규에 의한 운전정밀적성검사에 합격한 자 ■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마. 필수자격요건 관련 유의사항

- 필수자격요건의 자격증, 면허증 등 증빙서류는 공고일 현재 소지자에 한하며 증명서류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 경력 및 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제출된 증명서류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 경력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로 인정하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경력 인정합니다.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의 진위 확인 등을 위하여 내 발급기관의 연락처 및 발급자 성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건만 유효하고 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접수기간 : 2026. 8. 25.(화) 10:00 ~ 2026. 9. 14.(월) 17:00 까지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채용시스템 접수 ※ 우편, 방문접수 불가

- 주소창 입력 <https://hu.recruiter.co.kr> 또는 바로가기 클릭

다. 시험일정 : 전형별 합격자 및 시험장소는 별도 통보함

원서접수		2026. 8. 25. 10:00 ~ 2026. 9. 14. 17:00
1차전형	서류전형	2026. 9. 15. ~ 9. 16.
	합격자발표	2026. 9. 17.
2차전형	인성·필기 전형	2026. 10. 3.
	합격자 발표	2026. 10. 8.
3차전형	면접전형	2026. 10. 15.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23.
임용예정		2026. 11. 중 ※ 공사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최대 1년)

※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다음 전형이 연속적으로 있기에 지원자 분들에게서는 일정 확인 후 응시 바랍니다.

라.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인원 서버접속으로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시간까지 제출완료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구분별 중복접수가 불가하므로 중복지원 시 모두 무효처리되며, 추후 중복 지원으로 판명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경력 등은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제출된 증명서에 의하여 심사됩니다.
- 필수자격요건 자격의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에 의하여, 첨부된 증빙서류의 유효성 입증 및 미제출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5.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응시원서(사진첨부),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시 전산기재
2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	채용접수 사이트 동의
3	경력증명서(영문인 경우 한글번역 첨부) 또는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는 현재 재직중인 경우에 한하여 공고일 이후 발급 건만 인정 - 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 인정 불가 ※ 경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운전관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다음사항을 포함해 자세히 기재요구 (①근무기간 ②업체명 ③직위 ④담당업무 ⑤운행차량 종류 및 인승 ⑥근무형태) * 근무처, 직위(직급) 및 세부담당 업무, 발급기관의 연락처 및 발급자 성명 반드시 포함 * 경력기관(업체)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을 않을 경우 임의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가능 * 영업용 버스 운전경력이 없는 경우 운수종사자 양성교육 수료증 제출 必	스캔 파일 업로드
4	경력증명서 해당기간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종(공고일 이후 발급) ※ [제출서류3 경력증명서]와 별도로 필수 제출 사항임	스캔 파일 업로드
5	운수종사자 양성교육 수료증 * 해당자에 한하며, 영업용 버스 운전경력이 없는 경우 필수제출 * 국토교통부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공고일 이전 발급 된 교육 이수증(수료증)	스캔 파일 업로드
6	운전경력증명서(영문인 경우 한글번역 첨부)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 된 것으로, 운전면허경력·교통사고 경력·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로 할 것	스캔 파일 업로드
7	제1종 대형운전면허자격증 사본	스캔 파일 업로드
8	버스운전자격증 사본	스캔 파일 업로드
9	운전정밀 적성검사 결과서 1부(한국교통안전공단 종합판정표 발급)	스캔 파일 업로드
10	취업보호 및 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제출처를 화성도시공사로 명시하여 제출	스캔 파일 업로드
11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제출처를 화성도시공사로 명시하여 제출	스캔 파일 업로드
12	장애인 등 편의지원 신청서(붙임1 양식, 해당자만 제출) * 미제출하는 경우 편의사항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스캔 파일 업로드
13	자원봉사활동 실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65포털 또는 VMS포털 발급, 스캔 파일 업로드

※ 제출서류3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와 제출서류4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각각 필수제출 사항으로 **두 항목 중 하나의 항목이라도 누락 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제출서류는 출생년도(출생월일은 반드시 명기 : [예시] **0708-*****)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별표(또는 삭제) 처리된 것으로 제출

6.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온라인 접수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가 없으며, 접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부 파기됩니다.

7. 가산점 적용사항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점 비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가점합격률(30%) 이내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필기접수 및 면접접수 만점에 각각 5% 또는 10%씩 가산
- 일반 응시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간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 각 전형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합격(「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4항)

구분	가산비율	비고
보훈청에서 인정하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취업보호대상자	매과목 4할 이상 일 때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만점에 각각 5%, 10%씩 가산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실시되는 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사전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

※ 제출처를 화성도시공사로 명시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나. 우수자원봉사자 가점

- 자원봉사활동 기간 및 시간에 따라 가산점 차등 부여
(※ 단,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의 가점 부여)

구 분	금장	은장	동장	해바라기	기타
자격기준	기간3년이상 및 누적 300시간 이상	기간3년이상 및 누적 200시간 이상	기간3년이상 및 누적 100시간 이상	기간3년이상 및 누적 30시간 이상	이하
배 점	5	4	3	2	1

8. 기타사항

- 가. 지원서 또는 증명서 상에 지원자의 출신지, 출생년도 (출생월일은 반드시 명기), 학교명,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 개인정보 삭제가 미처리된 상태로 제출 된 경우 블라인드 후 평가진행

- 나. 임용 후 배차계획에 따라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을 모두 운행할 수 있으며, 근무지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내부 규정에 따라 화성시 관내 차고지(동탄, 향남, 남양, 전곡, 마도 등)로 임의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다.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라. 합격자 통지 및 임용 후 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원서상의 각종 기재착오, 누락, 자격미달 응시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바. 시험일정 및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공고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 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 전형 단계별 응시에 대한 별도의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자. 각 전형별 안내 및 합격자 발표 등은 화성도시공사 홈페이지(www.hu.or.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 채용과정에서 구인자의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할 수 있으며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 채용시 자격제한, 관련 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카. 「지방공기업법」 제61조(임직원의겸직제한)규정에 따라 화성도시공사 임직원의 겸직은 금지됩니다.
- 타. 채용관련 비리, 부정행위, 소명 등을 위한 채용이의센터를 운영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합격자 발표일 포함) 이의제기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메일 (gavin0206@hu.or.kr)로 불합격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채용관련 | : 인사교육부 | ☎ 031-8012-7771 |
| - 노선, 근무형태 등 운행관련 | : 교통기획부 | ☎ 031-8059-6961 |

[붙임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 편의지원 항목

장애유형 및 등급			편의지원 항목
지체 장애	상지	공 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공통편의지원, 답안지 대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통 편의지원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뇌병변 장애	공 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장애정도가 심한 자		공통 편의지원, 답안지 대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공통 편의지원
시각 장애	공 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정도가 심한 자		공통 편의지원,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공통 편의지원
청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기타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해당증후가 있을 경우 시험 중 화장실 허용,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과민성대장증후군, 과민성방광증후군, 신장, 심장, 장루, 요루 장애 등		해당증후가 있을 경우 시험 중 화장실 허용,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기타	임산부		시험 중 화장실 허용,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편의지원 대상 및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대 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 · 기타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산부 등 편의 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기간 및 방법	· 기 간 － 편의지원 신청 :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 관련서류 제출 :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 방 법 －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본인의 해당 여부, 지원요건, 구비서류, 편의지원 항목을 확인 후 입사지원서 및 편의지원 신청화면에서 편의지원 내용 기재 (채용홈페이지 첨부파일 제출, 미제출시 지원이 불가 할 수 있음) －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인 증명서 등)는 스캔하여 입사 지원서 작성시 첨부파일로 제출(등록)
유의사항	·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 의사진단(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 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단, 임산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 의사진단(소견)서에는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인정 여부 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 임산부의 경우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예시) 상기인은 임신 ()주, 필기시험 예정일(0000.00.00) 전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산모로서,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유형과 관련된 보조기기에 한함 · 확대문제지 등 : 확대문제지(118%, 150%), 축소문제지(82%), 확대답안지 (118%, 150%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답안표기) · 편의지원 신청자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여부 결정은 채용홈페이지에 게재 될 예정이며, 반드시 자신의 편의지원 신청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편의지원 신청서 서식_원서접수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지원직종		업무직	시험구분	☐ 인적성전형
지원업무분야			출생월일	
성명			전화번호 (보호자는 필요시 기재)	응시자 : 보호자 :
주소		□□□□□		
구분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임신부 ☐ 기타 일시적 장애 등 <상세기술>		
첨부서류		☐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상이부위 및 등급 확인 서류 ☐ 의사 진단(소견)서		
편의 제공 요청 사항	문제지 (택1)	☐ 해당 없음 ☐ 확대문제지 (☐ 118% ☐ 150%) ☐ 축소문제지 (☐ 82%)		
	답안지 (택1)	☐ 해당 없음 ☐ 대필 ☐ 확대답안지 (☐ 118% ☐ 150%) ☐ 아라비아 숫자 표기		
	시험실	☐ 해당 없음 ☐ 별도 시험실		
	장애인 보조기구 (본인지참)	☐ 해당 없음 ☐ 보조기구 명칭() ☐ 보조기구 사용 시 필요사항 (☐ 해당 없음 ☐ 필요사항 :)		
	기타	☐ 해당 없음 ☐ 화장실 허용 ☐ 응시요령 등 관련자료 서면 제공 ☐ 인성검사 시 필요사항 ()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공지		
※ 신청서 기재 시 편의제공 내용과 범위를 확인 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화성도시공사 채용시험에서 위와 같이 편의제공 대상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20 . . .				
화성도시공사 사장 귀하 성명(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